

▶ 연말정산 개정사항 비교

근로소득		2023년 연말정산	2024년 연말정산 (개정 후)													
총급여	(-)비과세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: 연 5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: 월 10만원 외항선·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: 월 30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: 월 2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: 연 700만원으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: 월 20만원으로 확대 외항선·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: 월 500만원으로 확대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근로소득에 추가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추가 및 한도 월 150만원 신설 													
	(-)근로소득공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급여액</th> <th>공 제 액 (한도: 2천만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0만원이하</td> <td>총급여액 × 70%</td> </tr> <tr> <td>500만원초과 1,500만원이하</td> <td>350만원 + 500만원초과액 × 40%</td> </tr> <tr> <td>1,500만원초과 4,500만원이하</td> <td>750만원 + 1,500만원초과액 × 15%</td> </tr> <tr> <td>4,500만원초과 1억원이하</td> <td>1,200만원 + 4,500만원초과액 × 5%</td> </tr> <tr> <td>1억원초과</td> <td>1,475만원 + 1억원초과액 × 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급여액	공 제 액 (한도: 2천만원)	500만원이하	총급여액 × 70%	500만원초과 1,500만원이하	350만원 + 500만원초과액 × 40%	1,500만원초과 4,500만원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초과액 × 15%	4,500만원초과 1억원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초과액 × 5%	1억원초과	1,475만원 + 1억원초과액 × 2%	좌 등	
총급여액	공 제 액 (한도: 2천만원)															
500만원이하	총급여액 × 70%															
500만원초과 1,500만원이하	350만원 + 500만원초과액 × 40%															
1,500만원초과 4,500만원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초과액 × 15%															
4,500만원초과 1억원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초과액 × 5%															
1억원초과	1,475만원 + 1억원초과액 × 2%															
근로 소득 금액	(-)인적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본공제: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: 150만원 *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입양자, 형제자매, 수급권자, 위탁아동(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) 추가공제: 경로우대(100만원), 장애인(200만원), 부녀자(50만원: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), 한부모(100만원) * 근로장려금과 부녀자공제 중복적용 허용 	좌 등													
	(-)연금보험료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보험료 및 공적연금보험료 (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학연금·우체국연금보험료): 근로자부담분 전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(23.6.30까지 하한액: 35만원, 상한액: 553만원) 소득공제 항목 중 후순위로 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좌 등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(24.6.30까지 하한액: 37만원, 상한액: 590만원) 좌 등 													
	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고용보험료: 근로자부담분 전액 건강보험요율: 보수월액의 7.09% 고용보험요율: 보수총액의 1.8% (실업급여 기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좌 등 건강보험요율: 보수월액의 7.09% 고용보험요율: 보수총액의 1.8% (실업급여 기준) 													
(-)주택연금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자금 (주택미연저축 포함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Min[① + ② , 500만원(또는 300/1,500/1,800만원)]</th> <th>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Min {(주택마련저축불입액+인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)×40%, 400만원}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만기15년 이상 & 고정금리 & 비거차식 분할상환</td> <td>1,800만원</td> </tr> <tr> <td>만기15년 이상 &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</td> <td>1,500만원</td> </tr> <tr> <td>만기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</td> <td>500만원</td> </tr> <tr> <td>만기10년 이상 &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</td> <td>3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고정금리: 차입금의 70% 이상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</p>	Min[① + ② , 500만원(또는 300/1,500/1,800만원)]	한도	① Min {(주택마련저축불입액+인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)×40%, 400만원}		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		만기15년 이상 & 고정금리 & 비거차식 분할상환	1,800만원	만기15년 이상 &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	1,500만원	만기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	500만원	만기10년 이상 &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	3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좌 등 Min[① + ② , 800만원(또는 600/1,800/2,000만원)] ①Min {(주택마련저축불입액+인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)×40%, 400만원}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* 한도 만기15년 이상 & 고정금리 & 비거차식 분할상환: 2,000만원 만기15년 이상 &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: 1,800만원 만기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: 800만원 만기10년 이상 &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: 600만원 * 고정금리: 차입금의 70% 이상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
Min[① + ② , 500만원(또는 300/1,500/1,800만원)]	한도															
① Min {(주택마련저축불입액+인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)×40%, 400만원}																
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																
만기15년 이상 & 고정금리 & 비거차식 분할상환	1,800만원															
만기15년 이상 &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	1,500만원															
만기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	500만원															
만기10년 이상 & 고정금리 or 비거차식 분할상환	300만원															

(-) 특별공제	주택자금 (주택마련 저축 포함)	<p>** 비거치식 : 차입금의 70%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주택 세대주 -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 -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공제가능 - 거주기간 차입 기준이자율: 2.9%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무주택자, 1주택자로서 대체 주택 취득자(외국인근로자 포함) ② 기준시가 5억원 이하 ('19년 이후부터) 주택청약종합저축 (주택마련저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- 한도 : 연간납입액 240만원 - 신청서류 : 무주택확인서, 주민등록표등본(삭제) 	<p>** 비거치식 : 차입금의 70%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주택 세대주 -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 -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공제가능 - 거주기간 차입 기준이자율: 3.5%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무주택자, 1주택자로서 대체 주택 취득자(외국인근로자 포함) ② 기준시가 6억원 이하 ('24년 이후부터) 주택청약종합저축 (주택마련저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- 한도 : 연간납입액 300만원 - 신청서류 : 무주택확인서, 주민등록표등본(삭제) 								
	기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3년 이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액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공제 (2014년 이후년부터 세액공제로 적용) -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정기부금 10년 ('13년 분부터) - 지정기부금 10년 ('13년 분부터) 부양가족 기부금의 공제요건은 세액공제대상 기부금과 동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3년까지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만료됨 								
(-) 그 밖의 소득공제	개인연금 저축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연금저축(2000.12.31. 이전 가입분) : Min [불입액 × 40% , 72만원] 	좌 등								
	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입한도 : 분기별 300만원 • 공제한도 : Min[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, 소득수준별 공제한도*] *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소득금액/근로소득금액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천만원 이하</td> <td>500만원</td> </tr> <tr> <td>4천만원 ~ 1억원</td> <td>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 <td>2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6.1.1. 이후 가입하는 자부터는 종합소득금액 →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함 (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에 16년 이후에 가입한 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법인대표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허용) 	사업소득금액/근로소득금액	공제한도	4천만원 이하	500만원	4천만원 ~ 1억원	300만원	1억원 초과	200만원	좌 등
	사업소득금액/근로소득금액	공제한도									
	4천만원 이하	500만원									
4천만원 ~ 1억원	300만원										
1억원 초과	200만원										
투자조합 출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벤처투자조합,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, 창업·벤처 전문 PEF 등 간접출자하는 경우 : 투자금액 × 10% • 개인투자조합, 벤처기업,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,000만원 이하분 : 투자금액 × 100% - 3,000만원 초과 - 5,000만원 이하분 : 투자금액 × 70% - 5,000만원 초과분 : 투자금액 × 30% • 종합소득금액의 50%를 한도로 함 	좌 등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<p>※ 공제대상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 및 용역 구입시 신용카드 등 사용분 - 전기·수도료,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은 제외 -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%는 사용액에 반영 - 면세점 사용금액 제외 	좌 등									

(-) 그 밖의 소득공제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<p>※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며, 최저사용금액은 아래의 ①,②,③,④,⑤,⑥, ⑦,⑧ 의 역순부터 적용한다.</p> <p>※ 공제율</p> <p>① 대중교통 사용액 : 80%</p> <p>② 전통시장 사용액(23년 4~12월) : 50%</p> <p>③ 전통시장 사용액(23년 1~3월) : 40%</p> <p>④ 도서공연 등 사용액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& '23년4~12월 사용분) : 40%</p> <p>⑤ 도서공연 등 사용액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& '23년1~3월 사용분) : 30%</p> <p>⑥ 현금영수증 사용액 : 30%</p> <p>⑦ 직불카드 등 사용액 : 30%</p> <p>⑧ 신용카드 등 사용액 : 15%</p>	<p>※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며, 최저사용금액은 아래의 ①,②,③,④,⑤,⑥의 역순부터 적용한다.</p> <p>※ 공제율</p> <p>① 대중교통 사용액 : 40%</p> <p>② 전통시장 사용액 : 40%</p> <p>③ 도서공연 등 사용액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) : 30%</p> <p>④ 현금영수증 사용액 : 30%</p> <p>⑤ 직불카드 등 사용액 : 30%</p> <p>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 : 15%</p>
	우리사주 조합 출연금	<p>※ 공제액 계산</p> <p>1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: 초과사용금액 × 공제율</p> <p>2. 한도액: ①+②</p> <p>① 기본한도(급여수준별 차등적용)</p> <p>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: 300만원</p> <p>-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: 250만원</p> <p>② 추가한도</p> <p>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: Min[기본한도초과액, 전통시장공제액+대중교통공제액+도서공연등 공제액, 300만원]</p> <p>-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: Min[기본한도초과액, 전통시장공제액+대중교통공제액, 200만원]</p>	<p>※ 공제액 계산</p> <p>1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: 초과사용금액 × 공제율 + (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전체소비분) × 10%</p> <p>2. 한도액: ①+②</p> <p>① 기본한도(급여수준별 차등적용)</p> <p>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: 300만원</p> <p>-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: 250만원</p> <p>② 추가한도</p> <p>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: Min[기본한도초과액, (Min(전통시장공제액+대중교통공제액, 도서공연등공제액, 300만원)+Min(전체소비증가분공제액, 100만원))]</p> <p>-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: Min[기본한도초과액, (Min(전통시장공제액+대중교통공제액, 200만원)+Min(전체소비증가분공제액, 100만원))]</p>
	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	<p>• Min [당해연도 출연금, 400만원 또는 1,500만원] (*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되는 경우)</p>	좌 동
	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	<p>• 가입대상 :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(공제대상 요건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)</p> <p>• 펀드요건(2015.12.31까지 가입분)</p> <p>① 자산총액 40%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</p> <p>② 연 납입한도 : 600만원</p> <p>③ 계약기간 10년 이상</p> <p>• 공제금액 : 10년간 연 납입액의 40%</p>	좌 동
	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	<p>• 가입대상 : 청년 &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(공제대상 요건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)</p> <p>• 펀드요건(2023.12.31까지 가입분)</p> <p>① 자산총액 40%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</p> <p>② 연 납입한도 : 600만원</p> <p>③ 계약기간: 3년이상 5년이하</p> <p>• 공제금액 : 계약기간동안 연 납입액의 40%</p>	<p>• 가입대상 : 청년 &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(공제대상 요건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)</p> <p>• 펀드요건(2024.12.31까지 가입분)</p> <p>① 자산총액 40%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</p> <p>② 연 납입한도 : 600만원</p> <p>③ 계약기간: 3년이상 5년이하</p> <p>• 공제금액 : 계약기간동안 연 납입액의 40%</p>
주택자금융속 소득공제	<p>• 소득공제 종합한도 : 2천5백만원</p> <p>• 한도 적용 소득공제 : 주택마련저축공제, 우리사주조합출자, 투자조합 등 출자, 신용카드, 소기업-소상공인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</p>	좌 동	

산출
세액

(x) 기본세율

과세표준	세율	
1,400만원이하	6%	좌 동
1,400만원초과 5,000만원이하	84만원+ 1,400만원 초과액 × 15%	
5,000만원초과 8,800만원이하	624만원+ 5,000만원 초과액 × 24%	
8,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	1,536만원+ 8,800만원 초과액 × 35%	
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	3,706만원+ 1억5천만원 초과액 × 38%	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9,406만원+ 3억원 초과액 × 40%	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억7,406만원+ 5억원 초과액 × 42%	
10억원 초과	3억8,406만원 + 10억원 초과액 × 45%	

(-) 세액
공제
감면

세액
감면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('22.12.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제공자): 3년간 70%, 2년간 50% 감면 • 그 외 외국인 기술자: 10년간 50% 감면 • 대상자: 외국인투자기업 R&D센터, 국내 기업부설연구소·연구개발전담부서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 등 • 내국인 중 외국 영주권자에 대한 적용: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	좌 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면대상 : 법정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(중소기업에 재취업, 이직뿐만 아니라 합병, 분할 등의 경우 포함)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년 -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(단, 2014년 1월 1일부터 취업한 경우에 한함) - 경력단절 여성 (단,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를 말함. 또한 2011.12.31.이전에 취업 후 재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함) • 기타고려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연금/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용배제 - 다만, 국민연금/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자는 감면대상(의료수급자 등 건강보험가입대상 제외자 감면적용) • 감면기간 : 취업 후 3년(청년의 경우에는 5년)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(5년→7년) • 감면율* :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70%(청년 90%) 감면 (한도 20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면대상 : 법정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(중소기업에 재취업, 이직뿐만 아니라 합병, 분할 등의 경우 포함)하는 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감면율 경과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3.12.31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등 : 100% 적용 (감면기간 만료) - '15.12.31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한 자(청년제외) : 50% 적용 (감면기간 만료) - '16.1.1 이후에 중소기업 취업한 자(청년제외) : 70% 적용 	좌 동

(-) 세액 공제 · 감면	세액 감면	- '18.1.1. 이후에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& '18년 기준 중소기업 취업 5년 미경과한 청년 : 90% 적용	좌 동												
		•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: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감면	좌 동												
		•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	좌 동												
(-) 세액 공제 · 감면	근로 소득 세액공제	• 핵심인력성과보상금(내일채움공제)에 대한 소득세 감면 : 성과보상금 중 기업 기여금 감면을 상향 • 중소기업 근로자: 청년 90%, 그 외 50% • 중견기업 근로자: 청년 50%, 그 외 30%	좌 동												
		• 성과공유 중소기업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: 2024.12.31.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영성과급 소득세 50% 감면 -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또는 최대주주 등 제외	좌 동												
		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: 이공계 박사학위(국내 대학학위 포함)를 소지한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10년간 소득세 50% 감면	좌 동												
(-) 세액 공제 · 감면	자녀 세액공제	○ 공제구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산출세액</th> <th>공제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30만원 이하</td> <td>산출세액의 55%</td> </tr> <tr> <td>130만원 초과</td> <td>71만5천원 + (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산출세액	공제액	130만원 이하	산출세액의 55%	130만원 초과	71만5천원 + (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)	좌 동						
		산출세액	공제액												
		130만원 이하	산출세액의 55%												
130만원 초과	71만5천원 + (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)														
○ 공제한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급여액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3백만원 이하</td> <td>74만원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이하</td> <td>74만원 -(총급여액-33백만원)×8/1000 * 단 최저 66만원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초과</td> <td>66만원 -(총급여액-70백만원)×1/2 * 단 최저 50만원</td> </tr> <tr> <td>1.2억원 초과</td> <td>50만원 -(총급여액-1.2억원)×1/2 * 단 최저 2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급여액	공제한도	33백만원 이하	74만원	7천만원 이하	74만원 -(총급여액-33백만원)×8/1000 * 단 최저 66만원	7천만원 초과	66만원 -(총급여액-70백만원)×1/2 * 단 최저 50만원	1.2억원 초과	50만원 -(총급여액-1.2억원)×1/2 * 단 최저 20만원					
총급여액	공제한도														
33백만원 이하	74만원														
7천만원 이하	74만원 -(총급여액-33백만원)×8/1000 * 단 최저 66만원														
7천만원 초과	66만원 -(총급여액-70백만원)×1/2 * 단 최저 50만원														
1.2억원 초과	50만원 -(총급여액-1.2억원)×1/2 * 단 최저 20만원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기본</td> <td>자녀 1~2명</td> <td>1명당 15만원</td> </tr> <tr> <td>자녀 2명초과</td> <td>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추가</td> <td>출생 · 입양</td> <td>- 첫째는 30만원 - 둘째는 50만원 - 셋째이상 7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금액	기본	자녀 1~2명	1명당 15만원	자녀 2명초과	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	추가	출생 · 입양	- 첫째는 30만원 - 둘째는 50만원 - 셋째이상 70만원					
구분	공제금액														
기본	자녀 1~2명	1명당 15만원													
	자녀 2명초과	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													
추가	출생 · 입양	- 첫째는 30만원 - 둘째는 50만원 - 셋째이상 70만원													
	연금계좌 세액공제	연금계좌 세액공제	※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손자녀 중 만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 기본자녀세액공제 적용 ※ 자녀장려금과 중복적용 배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공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기본</td> <td>자녀 1명</td> <td>15만원</td> </tr> <tr> <td>자녀 2명</td> <td>35만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추가</td> <td>자녀 2명초과</td> <td>3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</td> </tr> <tr> <td>출생 · 입양</td> <td>- 첫째는 30만원 - 둘째는 50만원 - 셋째이상 7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공제금액	기본	자녀 1명	15만원	자녀 2명	35만원	추가	자녀 2명초과	3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	출생 · 입양
구분			공제금액												
기본			자녀 1명	15만원											
	자녀 2명	35만원													
추가	자녀 2명초과	3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													
	출생 · 입양	- 첫째는 30만원 - 둘째는 50만원 - 셋째이상 70만원													
• 공제한도 및 공제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총급여</th> <th>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(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)</th> <th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.5천만원 이하</td> <td>600만원(900만원)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5.5천만원 초과</td> <td>+min(ISA납입액×10%, 300만원)</td> <td>1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급여	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(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)	공제율	5.5천만원 이하	600만원(900만원)	15%	5.5천만원 초과	+min(ISA납입액×10%, 300만원)	12%	좌 동					
총급여	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(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)	공제율													
5.5천만원 이하	600만원(900만원)	15%													
5.5천만원 초과	+min(ISA납입액×10%, 300만원)	12%													
		* 기존 연금계좌 한도 초과시 ISA납입 금액의 10% 한도													

(-) 세액 공제 · 감면 특례별 세액 공제	비과세 비과세 비과세	추가(최대 300만원) ** 연금계좌 공제한도 차감순서 : 퇴직연금 > 연금저축 > ISA퇴직연금 ISA연금저축 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 공제 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장성보험료(100만원한도) : 12% 장애인보장성보험료(100만원한도) : 15% 	좌 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등 의료비(A)+Min(그 밖의 의료비(B)-총급여액×3%, 700만원) : 15%* * 단, 난임시술비는 30% &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% 본인 등 의료비(A) : 기본공제대상자(연령·소득불문) 중 본인·65세이상자·장애인·건강보험산정특례자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→ 당해 의료비 전액(단, 아래(B)의 금액이 "-"이면 그 금액을 차감) 그 밖의 의료비(B) : 기본공제대상자(연령·소득불문) 중 본인·65세이상자·장애인·건강보험산정특례자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이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→ Min(당해 의료비-총급여액×3%, 70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등 의료비(A)+Min(그 밖의 의료비(B)-총급여액×3%, 700만원) : 15%* * 단, 난임시술비는 30% &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% 본인 등 의료비(A) : 기본공제대상자(연령·소득불문) 중 본인·65세이상자·6세 이하자·장애인·건강보험산정특례자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→ 당해 의료비 전액(단, 아래(B)의 금액이 "-"이면 그 금액을 차감) 그 밖의 의료비(B) : 기본공제대상자(연령·소득불문) 중 본인·65세이상자·6세 이하자·장애인·건강보험산정특례자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이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→ Min(당해 의료비-총급여액×3%, 700만원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비 지출액 : 15% [한도 : 초·중·고·생(300만원), 대학생(900만원), 본인(한도없음)] 	좌 등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치자금 기부금 - 10만원 이하 : 100/110 - 10만원 초과 : 15% (3,000만원 초과분 25%) 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원 이하 : 100/110 -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: 15% [특례+우리사주+일반] 기부금 : 15% (1,000만원 초과분 30%) 기부금별 한도 산식 - 특례기부금한도 : (근로소득금액-선순위공제대상 기부액) × 100% -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한도 : (근로소득금액-선순위공제대상 기부액) × 30% - 일반기부금한도 : (근로소득금액-선순위공제대상 기부액) × 30%* * 종교기부금의 경우 10% 로 함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- 특례기부금 10년 (13년 분부터) - 일반기부금 10년 (13년 분부터) 부양가족 기부금의 공제요건 - 소득요건 : 소득금액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 이하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(단,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(익년도 6월말)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특례+우리사주+일반] 기부금 : 15% (1,000만원 초과분 30%, 특례·일반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40%) 	

결정 세액	표준 세액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소득공제(건강/고용보험료 등·주택자금공제), 특별세액공제(보장성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특례기부금·일반기부금)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: 13만원 	좌 동	
		납세조합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납세조합 세액공제 = 산출세액의 5% • 한도 = 100만원 × (근로제공월수 ÷ 12) 	좌 동
		주택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연도 이자상환액 × 30% 	좌 동
		외국납부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min(①,②) ① 다음의 산식에 따른 금액 $\text{종합소득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} - \text{면제·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} \times \text{면제·감면비율}}{\text{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}}$ ② 외국에 납부한 세액 또는 외국에 납부할 세액(가산세 및 가산금 제외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도 계산방식 : 국별한도 방식만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별한도 :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- 일괄한도 :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 • 한도 초과액 발생시 10년간 이월 공제 •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(세액계산서) 제출기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칙 :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- 예외 : 외국정부 통지 지연시 등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		좌 동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적용배제)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, 오피스텔(준주택) 또는 고시원같은 다중생활시설(준주택)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율*에 따라 세액공제 * 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급여 5.5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자 제외) : 17% - 위 외의 근로자: 15% •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무주택 세대주(무주택 세대원,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) ②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분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③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 등)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, 본인이 지급할 것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시 적용배제)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, 오피스텔(준주택) 또는 고시원같은 다중생활시설(준주택)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1,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율*에 따라 세액공제 * 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급여 5.5천만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자 제외) : 17% - 위 외의 근로자: 15% •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무주택 세대주(무주택 세대원,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) ②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분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③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 등)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, 본인이 지급할 것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: 19% - 제외 :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- 적용기한 : 국내 최초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('23.1.1.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함) 		좌 동	
	(-)기납부세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소득간이세액표('23.2.28 시행) (2023.2.28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소득간이세액표 ('24.3.1 시행) (2024.3.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)
	(-)납부특례세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,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결정세액 • 적용기한 : '24.12.31. • 5년간 세액의 1/5을 매년 납부 	좌 동

차감징수 세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-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2월부터 4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(3개월) 	좌 동	
	기타의 사항	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	•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	좌 동
		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	•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	좌 동
		연말정산기간	•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지급일까지	좌 동
		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	• 일부 비과세는 제외하고 제출	좌 동
지방소득세	• 독립세로 전환	좌 동		
농특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어촌특별세 대상 공제항목 -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(16년도부터 제외) - 장기집합투자증권지축 (15년도부터 제외) - 주택차입금세액공제 	좌 동		